

중국 저작권법상 쇼트클립 보호에 관한 쟁점 연구

황 선 영*

〈목 차〉

- | | |
|-------------------------------|--------------------|
| I. 서론 | IV. 쇼트클립의 저작권법적 문제 |
| II. 쇼트클립에 관한 중국 법원 판결 | V. 결론 |
| III. 중국 저작권법상 쇼트클립의
보호 가능성 | |

1. 서론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5G와 같은 데이터 전송 기술의 발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짧은 시간 빠르게 즐기는 문화도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창작 유형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발전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넓히고, 저작물의 형태와 종류도 다양화

◆ 투고일자: 2019. 11. 06. 심사완료일: 2019. 12. 13. 게재확정일자: 2019. 12. 26.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시킨다. 창작의 주체와 종류의 다양화는 자연스럽게 창작물의 양적 성장을 가져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보이지만 이와 함께 저작물이 침해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증가시킨다.

중국은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한 이후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2010년 이후 중국 내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급증시켰고, 국가관권국을 중심으로 유관 산업 부처들과 연계한 검망행동(剑网行动)을 실시하고 있다. 검망행동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동영상, 음악, 서적, 다운로드, 앱 스토어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안 중 중요 이슈들을 유형별로 선별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일종의 행정단속행위이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018년 검망행동’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쇼트클립이 선정되었다.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찍은 18초에서 5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쇼트클립¹⁾이라고 하며 베이징 스타트업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만든 동영상 편집 앱 ‘틱톡(TikTok)’이 쇼트클립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이다. 쇼트클립은 일종의 UGC(User Generated Content)로 이용자가 직접 그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틱톡, 콰이쇼우, 휘샨이 대표적이다.²⁾ 쇼트클립은 영상의 길이가 짧고,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S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쇼트클립은 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글로벌 서비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

1) 쇼트클립(shortclip)은 중국어로 ‘短视频’이다. ‘짧다’라는 중국어 ‘短’과 ‘동영상’을 의미하는 중국어 ‘视频’이 결합한 짧은 동영상을 의미한다. 2017년 중국쇼트클립 산업보고서(2017年中国短视频行业研究报告)에서 쇼트클립은 PC, 모바일에 기반한 상영 시간 5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孙山, “短视频的独创性与著作权法保护的路径”, 知识产权 2019年第04期, p.47.

기 서비스로 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서’에서도 2018년 상반기 중국 인터넷 분야 8대 트렌드 중 하나로 쇼트클립이 포함되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산업은 문화 산업 발전에서 긍정적이라는 측면과 함께 쇼트클립의 제작과 전송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는 쇼트클립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2018년 중국 법원에 다수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쇼트클립과 관련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하고, 쇼트클립이 중국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지와 함께 저작권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쇼트클립에 관한 중국 법원 판결

1. 사실 관계³⁾

원고 베이징웨이보스지에유한공사(北京微播视界科技有限公司)는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플랫폼(抖音平台)의 운영자이다. 피고들은 바이두 산하 기업으로 동영상 플랫폼 휘파이플랫폼(伙拍)을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원판(汶川) 대지진⁴⁾ 10주년인 2018년 5월 12일 당매플랫폼(全国党媒信息公共平台)과 인민망(人民网)은 지정된 소재를 사용한 쇼트클립 제작을 제안했고, 더우인 플랫폼 사용자 “Black Face

3) 北京互联网法院(2018)京0491民初1号.

4) 쓰촨성 대지진(四川省 大地震, 사천성 대지진) 또는 원촨 대지진(汶川 大地震, 문천 대지진)은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쓰촨 성(四川省) 지방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0의 큰 지진으로 사망자만 6만9천 명에 이른다.

V”는 13초 길이의 “5.12,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5.12, 我想对你说)”이라는 기념 쇼트클립을 제작하였다. Black Face V로부터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넘겨받은 원고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쇼트클립의 독점권과 공중송신권을 향유하였으며, 해당 동영상은 원고 산하의 더우인 플랫폼에 공개, 전송, 배포되었다. 본안과 관련된 쇼트클립은 더우인 플랫폼상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공유되었으며 화면에는 “더우인”과 “ID : 145651081”이 워터마크 처리되어 재생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휘파이 플랫폼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안과 관련한 쇼트클립이 전송되었지만, 워터마크 출처 표시가 지워진 채 전송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E-mail을 이용해 피고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E-mail이 제대로 발송되었는지 또는 수취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이후 원고는 서면으로 ‘통지서’를 피고에게 재발송하고, 본안과 관련한 쇼트클립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쇼트클립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가 쇼트클립 전송 시 워터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전송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에 피고의 침해행위 정지, 영향 제거, 손해배상액 105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쇼트클립의 창작성 여부

지정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쇼트클립을 제작하는 것은 창작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받는 것이므로 완성된 동영상의 창작성 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본안과 관련한 쇼트클립이 이미 존재하는

소재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고, 13초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영상 제작과정에서 소재의 선택, 편집, 배열에서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쇼트클립과 차별된다면 이용자들에게 다른 효과를 제공한다 할 것이다. 본사건 쇼트클립은 대중에게 안락함과 앞으로 살아갈 힘을 부여함에 따라 대중의 정신적 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쇼트클립의 창작성을 구체화하여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쇼트클립은 일종의 영상저작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类电作品)이라 할 수 있다.

2) 워터마크 기술의 법적 성질

이용자 ID를 표시하는 워터마크는 제작자의 정보를 표시하고, 권리 정보를 표시하기 쉬운 방법이다. 상영되는 영상에 플랫폼 명을 표시한 워터마크는 해당 쇼트클립의 전송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중국 쇼트클립 산업계에서 출처 표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쇼트클립의 워터마크 표시는 일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적 성격의 것이지 저작권법상에서 의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는 아니다. 또한, 두 피고가 워터마크를 제거한 직접 행위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지-삭제’ 규칙의 적용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가장 경제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권리 보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연락 방식에 따라 권리 보호를 위한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통지는 유효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휘파이 쇼트클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쇼트클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관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두 번째 통지서를 전달받은 이후 즉시 ‘통지-삭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중국 저작권법상 쇼트클립의 보호 가능성

1.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

중국 「저작권법」 제1조는 “문학·예술 및 과학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저작권법의 보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2조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실시조례 제2조는 “저작물은 문학·예술·과학 영역 내에서 창작성을 갖추고, 모종의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성과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저작권법은 첫째, 문학, 예술, 과학영역에 포함되는 지적 성과이어야 하며 둘째, 창작성을 갖추고, 셋째, 유형의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저작권법과 실시조례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현한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나 학설은 이를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해석한다.⁵⁾ 표현은 아이디어와 달리 구체성을 지닌 것으로써 추상적인 관념의 수준을 벗어난 구체적 매체에 담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⁶⁾

5) 崔国斌, 著作权法原理与案例, 北京大学出版社, 2014, pp.37-39.

6) 정윤경·신지연,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위상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

2. 중국 저작권법상 창작성 요건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3조는 “저작권법에서 지칭하는 창작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저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창작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창작성에는 창작성과 독립적으로 완성될 것을 포함하여 해석한다.⁷⁾

저작물은 저작자의 노력 대가로 창작된 것이어야 하고,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으면 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개성의 표현인 만큼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과는 구별될 수 있는 일정한 창작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신규성일 정도로 강한 독창성일 필요는 없고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되는 정도면 충분하다.⁸⁾ 따라서 중국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성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할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⁹⁾ 제15조 규정에서도 “서로 다른 저작자가 동일한 소재로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물의 표현 방식이 독립적으로 완성된 창작물이면 저작자 각자는 독립된 저작권을 향유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소재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독립적으로 완성된 창작물일 경우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독립적으로 완성되었는지, 창작성을 가지는지 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중 독립적으로 완성되었는지 판단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으면 충분하

연구 제22권 1호, 2010, 212면.

7) 陈锦川, 著作权审判—原理解读与实务指导, 中国法律出版社, 2014, p.1.

8) 황선영,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드라마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중국최고인민법원(2013)民申字第1049号판결을 중심으로 -”, 중국지역연구. Vol. 5 No. 2, 2018, 144면.

9) 중국어 원문은 ‘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이다.

고 먼저 창작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쉽게 인정된다. 그러나 창작성 판단의 경우 재량적 판단 요소가 큰 편이다. 작가의 표현 정도, 사회 공공 영역에 미치는 영향, 작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소재의 선택 등 많은 요소가 고려되어 판단된다.¹⁰⁾ 다만,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를 이용해 창작된 저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받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중국은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넘어온 표현 및 소재의 경우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¹¹⁾

중국 저작권법 또는 실시조례, 사법해석에서 창작성의 정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창작성을 판단할 때 창작성의 길고 짧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웨이보, 트위터 등 SNS의 경우 140자 정도의 글자 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동시도 일반 산문에 비하면 길이가 짧지만, 저작물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나름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¹²⁾

3. 중국 저작권법의 유형적 형태의 복제 가능성

중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란 어떠한 유형적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가진 문학, 예술 및 과학의 범위에

10) 唐先博·黄明健·李萍, “我国作品独创性认定的实证研究”, 贵州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7年第03期, p.153.

11) 韩成军, “著作权侵权行为的判定”, 河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0年1月, p.81; 황선영,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드라마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중국최고인민법원(2013)民申字第1049号 판결을 중심으로 -, 중국지역연구. Vol. 5 No. 2, 2018, 145면. 재인용.

12) 孙山, “短视频的独创性与著作权法保护的路径”, 知识产权 2019年第04期, p.46.

속하는 지적 성과를 말한다.”라고 하여 복제 가능성을 저작물의 성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형적 형태로의 복제 가능성은 저작물의 적극적인 성립요건이라기 보다 소극적인 성립요건으로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¹³⁾ 즉, 표현의 유형적 형태의 복제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즉흥적인 노래나 연설, 연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4. 중국 저작권법상 쇼트클립의 보호 여부

쇼트클립은 문화, 예술 분야에 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에 따라 저작물 성립요건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쇼트클립의 저작물성 판단에서 핵심적 부분은 창작성이다. 일부 학자는 쇼트클립은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쇼트클립의 창작성을 부정한 이유는 바로 상영 시간이 너무 짧음에 따라 제작과정에서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거나 없다는 것이다. 쇼트클립은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분 이내의 동영상상을 의미하며, 쇼트클립의 기술적 특징 중 하나가 ‘빠른 촬영’이다. 창작자가 짧은 시간에 동영상상을 만들고 편집하므로 이렇게 탄생한 짧은 동영상에는 제작자의 창작성이 포함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쇼트클립의 재생 시간만을 창작성 판단의 요소로 볼 수는 없다. 쇼트클립 제작자가 일정한 소재를 가지고 영상에 표현하고 싶은 사실, 자신의 감정 또는 사상을 편집 기술과 배열 방법을 사용하여 영상을 완성하였다면 이는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된 표현으로 저작물로써 보호할 가치를 가진다. 또한 중국 저작권법은 창작성의

13) 한매화, 중국저작권법, 법영사, 2008, 25면.

14) 孙山, “短视频的独创性与著作权法保护的路径”, 知识产权 2019年第04期, p.45.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창작성의 유무만을 판단하면 충분하다.¹⁵⁾ 따라서 쇼트클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음악, 인물의 표현, 대화, 배경 등 다양한 요소의 선택지가 있으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 제작하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런 개성이 표현된 쇼트클립은 창작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¹⁶⁾

앞선 판결에서도 법원은 창작성 판단에 3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첫째, 영상의 길고 짧음은 창작성 판단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둘째, 비록 쇼트클립이 이미 존재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창작한 행위이지만 배열, 선택, 편집 과정에서 공중에게 주는 영향, 효과, 감동은 다르다. 셋째,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원찬 대지진을 통해 공중에게 재난에 대한 위로, 삶의 축복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였다.¹⁷⁾

쇼트클립은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로 일종의 영상저작물에 속한다.¹⁸⁾ 다른 쇼트클립 판결에서 법원은 “비록 해당 영상의 방영 시간이 36초로 매우 짧지만,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이며, 제작 방식은 영화와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类电作品)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¹⁹⁾

15) 李琛, “短视频产业著作权问题的制度回应”, 出版发行研究 2019年04期, p.8.

16) 孙山, “短视频的独创性与著作权法保护的路径”, 知识产权 2019年第04期, p.47.

17) 张雯·朱阁, “侵害短视频著作权案件的审理思路和主要问题—以“抖音短视频”诉“伙拍小视频”侵害作品信息网络传播权纠纷一案为例”, 法律适用 2019年第06期, p.4.

18) 중국은 영상저작물이라는 포괄적 용어 대신 “영화저작물(电影作品)과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以类似摄制电影的方法创作的作品)”로 표현하여 “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매개물에 연속적인 영상을 수록하여 그 영상을 적당한 장치에 의해 상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전송하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 정의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제3차 개정안 초안에서는 “영화저작물과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라는 표현 대신 포괄적 의미의 시청각저작물(视听作品)로 용어 수정이 포함되어 있다.

19)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2017)京0108民初51249号.

그리고 쇼트클립의 유형적 형태의 복제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른 쇼트클립 저작권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제작된 쇼트클립은 촬영자가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통해 촬영한 것이고, 촬영 과정에서 화면 클로즈업 기법 등 촬영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영상 편집과정에서 창작자의 지적 성과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설시한바 있다.²⁰⁾ 그러면서 법원은 “영상이 독창적으로 표현되고 정교하게 편집되었으며, 유형적으로 복제 가능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유형 중 6번째인 영상저작물과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쇼트클립은 유형적 형태의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²¹⁾

종합하면 편집, 배열, 소재 등에서 창작성을 가지는 쇼트클립은 중국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창작적 요소를 가지는 쇼트클립 제작자는 창작자에 해당하여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짐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V. 쇼트클립의 저작권법적 문제

1.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쇼트클립에는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하는 콘텐츠도 있지만, 이미 제작된 다른 동영상, 이미지, 음악 등을 이용하거나 인용하여 제작하는

20)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2018)京0108民初34939号.

<https://www.qixin.com/lawsuit/95694a1e-431f-4d08-8793-522ce601e8de?id=5d54abdfef551920600761c>[방문일자: 2019.10.30.]

21)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2018)京0108民初34939号.

경우도 많다. 스스로 제작한 쇼트클립은 이를 제작한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져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개인이 특히 이미 제작된 방송, 음악 콘텐츠 등을 이용하여 쇼트클립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 또는 전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쇼트클립 제작자의 경우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 성명표시권²²⁾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저작물 상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자가 당해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권리이다.²³⁾ 더불어 성명표시권에는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성명을 금지하는 의미도 포함한다.²⁴⁾ 그러므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그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는 주로 다른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다

22) 중국어 원문으로는 ‘서명권(署名权)’이다.

23) 한매화, 중국저작권법, 법영사, 2008, 151면.

24) 刘春田, 知识产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 p.89.

운로드 받은 후 이를 편집하여 게재하면서 원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명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실, 쇼트클립은 움직이는 영상과 음악이 삽입된 형태로 성명 표시가 어렵거나 부득이하게 생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물 이용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한 관행에 따라 성명 표시를 하여야만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2) 동일성유지권²⁵⁾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저작물이 왜곡·곡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4항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타인의 왜곡이나 훼손으로 자신의 명성에 손해를 입거나 저작물의 내용 또는 형식이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²⁶⁾

쇼트클립은 다른 저작자가 창작한 영상, 사진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편집, 배열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쇼트클립이 원저작자의 영상을 다소 수정, 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가미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3) 복제권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배타적 권리 중 하나이다. 중

25) 중국어 원문으로는 ‘완정성보호권(保护作品完整权)’이다.

26) 郑成思, 版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p.171.

국 「저작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인쇄, 복사, 탁본, 녹음, 녹화, 음반·영상물로의 복제, 사진으로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1부 또는 여러 부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가 된다.

쇼트클립을 제작할 때 다른 제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제작자의 하드디스크 등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쇼트클립 제작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배포권²⁷⁾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배포권이란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본 또는 복제물이 유형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²⁸⁾

쇼트클립은 인터넷을 통한 파일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배포권은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 공중송신권²⁹⁾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12항에 의하면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따라 공중에게 제공하고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27) 중국어 원문으로는 ‘발행권(发行权)’이다.

28) 崔国斌, 著作权法原理与案例, 北京大学出版社, 2014, p.396.

29) 중국어 원문으로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이다.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공중송신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트워크 전송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물이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제공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그 행위는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성을 가지는 행위를 말한다.³⁰⁾

쇼트클립 제작자가 쇼트클립을 제작한 이후 동영상 제공 플랫폼에 업로드한 경우 쇼트클립은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따라 공중에게 송신된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쇼트클립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저작물의 공중송신권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 쇼트클립 제작자의 공정이용 항변

쇼트클립은 콘텐츠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강하므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렇다고 쇼트클립에 대한 강한 저작권 보호를 하면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빠진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정허락,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이후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다.³¹⁾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문화 향상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음에 따라 쇼트클립과 관련한 공정이용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쇼트클립 제작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정이용을 항변 사유로

30) 王迁, 知识产权法教程(第三版),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p.145.

31) 丛立先, “论短视频作品的权属与利用”, 出版发行研究, 2019年第04期, p.11.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은 없고 열거조항으로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상 열거된 저작권 제한 사유 중 특히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인용 등이 공정이용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제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지나친 확대 해석은 오히려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상실시킬 수도 있음에 따라 쇼트클립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쇼트클립 제작자가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전송되는 수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비평, 보도, 기타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만약 쇼트클립 제작자가 여러 작품의 내용을 요약한 시리즈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단일한 쇼트클립만을 가지고 저작물에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사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에는 쇼트클립 전송이 독립된 시장을 가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³²⁾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창작된 쇼트클립이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면서 제작자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전달하는 중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쇼트클립 제작자가 창작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편집, 복제하여 만들어진 쇼트클립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송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문제가 된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32) 李琛, “短视频产业对著作权保护的可能影响”, 中国出版 2017年第04期, p.14.

관한 규정은 없고, 불법행위법 또는 저작권법 관련 실시조례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중국 「불법행위법」 제36조 제2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권리침해행위를 하면, 권리를 침해받은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중단, 연결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지할 권리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확장된 손해 부분을 인터넷 사용자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침해 내용의 존재를 예측하거나 예견, 감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온라인상 발생하는 권리침해 상황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과실이 없다면 권리자의 통지 요청 이후 침해행위와 관련한 삭제 조치를 한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³³⁾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피침해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삭제, 중단, 연결차단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한 연대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불법행위법은 피침해자의 ‘통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면책을 위한 원칙성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피침해자의 ‘통지’의 구체적 내용은 저작권법 관련 조례 중 하나인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제14조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동 조례 제14조는 서면 통지의 내용에 “(1) 권리자의 성명(명칭), 연락 방식, 주소, (2) 삭제 또는 링크 해제를 요구하는 작품, 실연, 음반 영상물의 명칭과 인터넷 주소, (3) 권리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면형식에는 E-mail과 같은 전자형식의 문서를 통한 것도 인정될 수 있다.³⁴⁾ 그

33) 李琛, “短视频产业著作权问题的制度回应”, 出版发行研究 2019年04期, p.6.

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의 해석에 관해 중국 법원은 권리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삭제, 중단, 연결차단의 조치 중 우선순위는 없으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적절하다는 기술적 조치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³⁵⁾ 불법행위법 제36조 제2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³⁶⁾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는 불법행위법 제36조와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조례는 불법행위법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법이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송한 행위”로 객관적 귀책요건이 충족되면 침해 판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동 조례 제23조 후단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과실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그러나 링크된 작품, 실연, 음반 영상물이 권리침해행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明知)’, ‘알 수 있었을(应知)’ 경우에는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과실 요건을 책임판단의 사유로 분명히 밝히고 있

34) 张新宝·任鸿雁, “互联网上的侵权责任: 《侵权责任法》第36条解读”, 中国人民大学学报 2010年第04期, p.22; 황선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중국법 연구”, 현대중국연구, 19(3), 2017, 375면 재인용.

35) 张新宝·任鸿雁, “互联网上的侵权责任: 《侵权责任法》第36条解读”, 中国人民大学学报 2010年第04期, p.22; 황선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중국법 연구”, 현대중국연구, 19(3), 2017, 375면 재인용.

36) 周波·杨康锐, 论网络服务提供者的连带责任—以网络著作权间接侵权为视角, 国际商务 2012年第01期, p.115.; 황선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중국법 연구”, 현대중국연구, 19(3), 2017, 375면 재인용.

37) 孔祥俊, 网络著作权保护法律理念与裁判方法, 中国法制出版社, 2015, p.137.

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침해행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明知)’, ‘알 수 있었을(应知)’ 경우에는 침해자와 함께 공동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판결에서 법원은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 불법행위법과 관련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였다. 중국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통지-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의 행위를 ‘분명히 알고 있거나(明知)’, ‘알 수 있었을(应知)’ 상태인 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더우인 쇼트클립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의 두 번째 ‘통지서’를 전달받은 이후 즉시 ‘통지-삭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권리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 검토한 중국 법원 판결은 2018년 베이징에 설립된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첫 번째 사건이자 새로운 창작물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쇼트클립의 전송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사건으로 중국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동 사건은 쇼트클립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포함되는지, 저작권법의 보호 요건인 ‘창작성’을 만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해당 판결에서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을 것, 문학·예술·과학 영역의 창작물에 속할 것, 유형화된 방식으로 복제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창작물의 길이, 창작성의 정도를 보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쇼트클립이 제작, 편집 등의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이 포함된 표현이라면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보호된다. 대상 판결 이외에 다수의 쇼트클립과 관련한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베이징 인터넷 법원과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쇼트클립은 음(音)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매개물에 연속적인 영상을 수록하여 그 영상이 적당한 장치로 상영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전송된 일종의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영상저작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쇼트클립 창작자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된 쇼트클립은 저작권 침해 소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쇼트클립 제작 때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 배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쇼트클립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합리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쇼트클립을 유통하는 플랫폼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유럽의 경우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안'이 가결되었다. 그중 제17조는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사전 차단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뉴스 등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즉,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제공하였던 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플랫폼 제공자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 권리자와의 이용허락 및 공정한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입법 태도의 변화가 감지된다.

작년 중국 국가관권국은 틱톡(TikTok) 등 15개 쇼트클립 업체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방행동을 통해 쇼트클립 관련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 57만 건을 직접 삭제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저작권법 제3차 개정에서도 제73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입법 초안의 내용만 검토하였을 때에는 여전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개정안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중국 내 쇼트클립 관련 법원 판결들은 공통으로 쇼트클립을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로 인식하고, 쇼트클립 산업 발전과 건전한 유통, 저작권자 권리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쇼트클립은 관련 산업 영역의 발전과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 저작권법은 선진화된 법·제도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을 진행했다. 새롭게 발전하는 쇼트클립 산업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에 관해 향후 중국 저작권법 개정 또는 사법해석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 법영사, 2008.

정윤경·신지연,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위상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 문화연구 제22권 1호, 2010.

황선영,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드라마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중국최고인민법원(2013)民申字第1049号판결을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Vol. 5 No. 2, 2018.

〈해외 문헌〉

孔祥俊, 网络著作权保护法律理念与裁判方法, 中国法制出版社, 2015.

刘春田, 知识产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

王迁, 知识产权法教程(第三版),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郑成思, 版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陈锦川, 著作权审判—原理解读与实务指导, 中国法律出版社, 2014.

崔国斌, 著作权法原理与案例, 北京大学出版社, 2014.

唐先博·黄明健·李萍, “我国作品独创性认定的实证研究”, 贵州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2017年第03期.

李琛, “短视频产业对著作权保护的可能影响”, 中国出版, 2017年第04期.

李琛, “短视频产业著作权问题的制度回应”, 出版发行研究 2019年04期.

孙山, “短视频的独创性与著作权法保护的路径”, 知识产权 2019年第04期.

张雯·朱阁, “侵害短视频著作权案件的审理思路和主要问题—以“抖音短视频”诉“伙拍小视频”侵害作品信息网络传播权纠纷一案为例”, 法律适用 2019年第06期.

张新宝·任鸿雁, “互联网上的侵权责任:《侵权责任法》第36条解读”, 中国人民大学学报, 2010年第04期.

周波·杨康锐, “论网络服务提供者的连带责任—以网络著作权间接侵权为视角”, 国际商务 2012年第01期.

丛立先, “论短视频作品的权属与利用”, 出版发行研究, 2019年第04期.

韩成军, “著作权侵权行为的判定”, 河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0年1月.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2017)京0108民初51249号.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2018)京0108民初34939号.

北京互联网法院(2018)京0491民初1号.

〈인터넷 자료〉

<https://www.qixin.com/lawsuit/95694a1e-431f-4d08-8793-522ce601e8de?id=5d54abdfefbf551920600761c> [방문일자: 2019.10.30.]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5G와 같은 데이터 전송 기술의 발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짧은 시간 빠르게 즐기는 문화도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창작 유형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발전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넓히고, 창작물의 형태와 종류도 다양화시킨다. 창작의 주체와 종류의 다양화는 자연스럽게 창작물의 양적 성장을 가져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보이지만 이와 함께 저작물이 침해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증가시킨다.

본 논문은 중국의 쇼트클립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 소개를 중심으로 중국 법체계에서의 쇼트클립 저작물성 성립요건과 저작권과 관련한 침해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검토한 중국 법원 판결은 2018년 베이징에 설립된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첫 번째 사건이자 새로운 창작물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쇼트클립의 전송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쇼트클립은 제작, 편집 등의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이 포함된 표현이라면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쇼트클립 제작 때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 배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창작된 쇼트클립이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면서 제작자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전달하는 중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 수단 중 하나인 쇼트클립은 문화 산업 발전적 측면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양측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쇼트클립, 저작권, 저작물, 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Abstract〉

A Study on the main Issues of Short-clip protection under China's Copyright Law

Hwang, Seon-yeong^{*}

Advances in mobile, transmission technologies such as 5G, and applications are changing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which new works can be produced. With these changes and developments, the range of subjects that can be created is expanding, and forms and types are diversifying. The diversity of the subject and kind of creation naturally brought about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creation. Along with the positive aspects of cultural development, which is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he negative aspe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are also increasing.

This paper introduces the court ruling regarding Short-clips in China, an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ith the copyright of Short-clips are reviewed. In particular, the Chinese court reviewed the first case of the Beijing Internet Court established in Beijing in 2018, that is a copyright

^{*} Research Professor, Dong-A University.

infringement case related to the transmission of Short-clips, a type of new cre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decision, Short-clips can be protected as works by Chinese copyright law if the creator's individuality is expressed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editing. However, when editing and arranging Short-clip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original author,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still exists. As the created Short-clip is transmitted online, not only creator but also intermediaries who deliver works cannot be completely free from infringement issues related to copyright law as online service providers.

Short-clip,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one's individuality as society changes, needs a careful approach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and protect the rights of creators.

Key Words: Short-clip, Copyrights, Works, Infringement, Online Service Providers.